

# 알루미늄샷시제조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

성별	남	나이	46세	직종	노무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# 1 개 요

김 ○ ○ (46세, 남)은 1990년 알루미늄 샷시를 제조하는 J사에 입사하여 운반 및 포 장 작업을 하던 중 1996년 겨울부터 양쪽 어깨가 쑤시는 증세가 나타났고, 1999년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화경

J사는 외부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봉을 가열하여 압출과정으로 알루미늄 샷시를 제 조하는 사업장이다. 김 ㅇ ㅇ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포장반에서 최종 생산품인 알 루미늄 샷시를 포장하고 상·하차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간혹 피막작업을 하였다. 피막작업은 전기분해 방식으로 알루미늄 샷시에 피막을 입힌 후 수세하는 작업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. 피막재로는 황산니켈이나 황산제일주석을 사용하였다.

#### 3 의학적 소견

김○○는 1996년 겨울부터 양쪽 어깨가 쑤신 증상을 느꼈고 1997년 10월에는 양 견갑부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. 1998년 2월에는 오십견(의증)으로 물리치료를 받 았다. 이후 보행장애가 나타나고 혼자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1998년 12월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. 심의 당시에는 양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 을 정도로 악화되었다.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건강진단 기록에서는 정상으로 나 타났다.

## 4 결 론

- 이 ㅇ ㅇ 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
- ① 알루미늄 샷시 제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업장이 알루미늄 용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압출만을 하므로 알루미늄 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
- ② 피막 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근위축성측상경화증에 영향을 줄만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
-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